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

◇ 개정 이유

상표·디자인 중간서류의 처리 기간을 조정하고, 심사보류 사유 및 보류사유 해제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상표디자인사무취급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상표·디자인 중간서류의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(제27조 및 제67조)
- 나. 상표 분야 심사보류 사유 명확화(제30조)
- 다. 심사재개통지시 심사보류 해제사유의 기재 요건 조정(제31조)
- 라.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익명제출 정보제공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(제33조 및 제72호)
- 마. 동일자 추첨 절차 개선(제33조의7)
- 바. 심사면담의 전자적 기록 및 온라인 심사면담을 실시를 위한 서식 변경(제101조 및 별지 서식 제9호)